

1. 일반결합

- 가. 병의 증세 또는 경과가 좋지 않은 악성종양
- 나. 고혈압성 응급증

2. 비강(鼻腔) · 구강 · 인후기관 계통

-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을 정도로 대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강 · 구강 · 인후 · 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

3. 흉부

-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호흡기 질환

4. 심장 · 혈관 및 순환기 계통

-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심혈관 질환

5. 복부 장기 및 내장 계통

-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간질환

6. 생식비뇨기 계통

-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신장질환

7. 내분비 계통

-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내분비질환

8. 혈액 또는 조혈 계통

-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혈액질환

9. 신경 계통

- 가. 뇌졸중(腦卒中) 등 뇌혈관질환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후유증
- 나.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후유증
- 다. 만성 진행성 · 퇴행성 질환 및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뇌척수염(腦脊髓炎)[유전성 무도병(舞蹈病:근육에 불수의적 운동장애를 나타내는 증후군), 근위축성 측색경화증, 소뇌성운동실조증(小腦性運動失調症) 및 다발성 경화증을 포함한다]
- 라.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다음 질환
 - 1) 뇌종양 및 척수종양

- 2) 외상성 신경질환
- 3) 말초신경질환
- 4) 전신성의 신경근(神經筋) 접합부 질환
- 5)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
- 6) 뇌전증(腦電症)(증상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에 즉각적으로 큰 지장이 생기는 운전 등의 업무로 한정한다)

10. 팔다리

- 가. 문서 작성 능력 또는 자기 표현 능력에 큰 지장이 있는 상지(어깨·팔·손) 장애
- 나.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관절 질환

11. 귀

-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청력 장애

12. 눈

-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시각 장애, 시야 장애, 안구운동 장애 또는 색각 이상

13. 정신 계통

- 가.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계통의 질병
- 나. 마약중독과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

*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을 채용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✓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4호·제6호·제12호·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전상군경(戰傷軍警), 공상군경(公傷軍警), 4·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
- ✓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(義傷者)
- ✓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